

#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로 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밝히며,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사무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위반의 소지를 해결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